

# 공정위,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1차조사 이의신청 결과 발표

- 이의신청 기각,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총 740억원으로 확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월) '98년 5월 8일부터 6월 20일간의 기간 중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기업집단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삼성과 SK그룹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용하여 과징금의 일부를 삭감했으나 현대와 대우, LG그룹 등 나머지 부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그룹의 과징금 경감조치는 삼성과 SK그룹이 첫 심사결정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실제차입금리 자료 등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자율 계산을 약간 달리해 나온 것으로서,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라고 판정한 부실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이나 무보증전환사채의 고가 매입, 적자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등이 적법한 투자행위라고 주장한 5대 기업집

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이번 5대 기업집단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의신청이 일부 수용된 부분은 삼성생명(주)가 삼성자동차(주)와 삼성에버랜드 등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부분과 SK(주)를 비롯한 8개 SK그룹 계열사들이 증권예탁금 예치를 통해 SK증권(주)를 지원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과징금이 10억8천5백만원이 줄어 1백3억여원을 부과하게 되었으며, SK그룹은 6억6천4백만원이 감소해 1백84억여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이후에 지원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등 범위반행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면 이의신청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기업집단별 계열사 및 최종과징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현 대	삼 성	대 우	L G	S K	합 계
계열사수	35(34)	7	6	20	12	80(79)
최종과징금	226	103	89	102	184	704

\* 현대알루미늄공업(주)가 고려산업개발에 합병되어 실체는 79개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이견(異見)에 대해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 및 시정은 시장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보하

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그 의도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은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공정거래법에

서 내부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우리 나라와 같이 동일인이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며 각자 독립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우리와 같은 부당내부거래가 문제시되지 않으며, 그 규제의 필요

성도 없으므로 우리의 부당내부거래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계열사간의 모든 내부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부당한 지원인 경우에만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일부인용 내용 및 사유** ◆

업 체 명	일부인용 내용 및 사유
<p><b>삼성생명보험(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위사실</b> : 삼성생명보험(주)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삼성자동차(주)와 삼성에버랜드(주)의 CP를 매입하여 지원</li> <li>▶ <b>원 심 결</b>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액 산정에 있어서 시중할인율의 변동을 반영한 개별정상금리(실제 CP할인율)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해 지원금액과 과징금 산정</li> <li>▶ <b>일부인용 사유 및 과징금 변경내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 지원받은 삼성자동차와 삼성에버랜드가 개별정상금리(실제 CP할인율)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원금액 재산정</li> <li>· 과징금 변경내역 : 1,085백만원 삭감 (당초 6,557백만원 → 변경 5,472백만원)</li> </ul> </li> </ul>
<p><b>SK(주)등 8개 SK 계열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위사실</b> : SK(주) 등 8개 SK 계열사가 증권에탁금 예치를 통해 SK증권을 지원</li> <li>▶ <b>원 심 결</b>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액 산정에 있어서 시중할인율의 변동을 반영한 개별정상금리(실제차입금리)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해 지원금액과 과징금 산정</li> <li>▶ <b>일부인용 사유 및 과징금 변경내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 지원받은 SK증권이 개별정상금리(실제 차입금리)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원금액 및 과징금 재산정</li> <li>· 과징금 변경내역 : 664백만원 삭감 (당초 4,970백만원 → 변경 4,306백만원)</li> </ul> </li> </ul>

◆ **주요 쟁점사항** ◆

이의신청 내용	검토의견
<p><b>1. 후순위채권 고가 매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에 따라 계열사가 인수</li> <li>▷ 증시 여건상 증자가 불가능하여 다른 대안이 없었음</li> <li>▷ 주주로서 회사를 회생시키는 방안임</li> <li>▷ 공신력있는 우량기업은 부도의 위험이 없으므로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은 위험성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순위채권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이외에는 인수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적자계열사까지 동원하여 인수한 행위를 문제삼는 것임</li> <li>▷ 후순위채권은 부도시 변제불능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금융사의 장래가 불확실하며, 금융위기시에는 Risk premium이 급격히 상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것은 정상적인 투자로 볼 수 없음</li> <li>▷ 5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라고 하여 부도위험이 없다는 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논리임</li> </ul>
<p><b>2. 유상증자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로서 투자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임</li> <li>▷ 증자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서도 부당내부거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음</li> <li>▷ 투자행위는 증권거래법과 상법 등으로 규정할 사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증자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문제삼는 것임</li> <li>▷ 특히 자본침식상태에 있는 계열사까지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인수에 참여한 계열사들은 증자 참여 전에 지분이 없었으며 특별한 거래관계도 없어 별다른 투자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유상증자 참여행위는 정상적인 출자가 아닌 부당한 지원행위이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됨</li> <li>▷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열거주의가 아닌 예시규정임</li> </ul>
<p><b>3. 무보증전환사채(CB) 고가 매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 인수는 사실상의 출자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대상이 아님</li> <li>▷ 당좌차월금리와 비교하여 산정한 부당지원금액은 부당하며 부당지원금액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문제삼는 것임</li> <li>▷ 특히, 3년 연속 적자이고 자본이 잠식된 업체가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를 계열사를 동원하여 고가로 인수케 한 행위 등을 볼 때 동 행위는 정상적인 출자행위가 아니라 부당지원행위이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됨</li> <li>▷ 본 사채 발행을 전후한 시기에 제3자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실적이 없으므로 당좌차월금리를 적용한 것임</li> </ul>